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32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강명구 · 김용태 · 성일중
엄태영 · 구자근 · 조은희
김미애 · 김정재 · 박성훈
김재섭 · 김승수 · 이성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무인점포”란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무인점포 안전관리) 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이하 “무인점포개설자”라 한다)는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인점포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2. 무인점포 출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시정명령)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

조의5를 위반한 무인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에 제2호의10 및 제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0.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11. 제13조의6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인점포 안전관리 조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무인점포”란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 정보단말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u>
5. ~ 16. (생략) <u><신설></u>	5. ~ 16.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5(무인점포 안전관리) 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이하 “무인점포개설자”라 한다)는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무인점포 내·외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u> <u>2. 무인점포 출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u> <u>의 설치 및 운영</u> <u>3. 그 밖에 범죄 예방 등 무인</u>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9. (생략) <신 설> <신 설> 3. ~ 6. (생략) ④ (생략)	<u>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시정명령)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5를 위반한 무인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의9. (현행과 같음) 2의10.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u>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의11. 제13조의6에 따른 <u>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